

## 장애학생 지원 규정

제정 2008. 09. 30.  
3차 개정 2019. 06. 25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본교)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수업, 교육, 학내 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'장애학생'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거나, 이에 준하는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본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# 제2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

**제4조(원칙)** 장애학생에게 교육·수업, 학내 활동 및 진로 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**제5조(주관부서)** 장애학생지원 서비스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주관부서로 한다. (개정 2011.8.8)

**제6조(교수·학습지원)** 본교는 장애학생에게 교수·학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 교수·학습 지원 권고
2. 장애학생 수강 신청 우선권 부여
3. 장애학생 수강과목 강의실 우선 배정
4. 장애학생 지정 좌석 지원
5. 도우미 지원

**제7조(이동·편의시설 지원)** 본교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한 요구 개선
2.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
3. 장애학생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 보조 도구의 대여

**제8조(생활지원)** 본교는 장애학생의 교내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 행정 콜 서비스
2. 장애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
3. 기숙사 지원
4. 진로 상담 지원

###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**제9조(구성 및 기능)** ①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
2.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의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(개정 2016.06.21)
4. 장애학생 지원시설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(호 신설 2016.06.21)

② 위원회는 학생행복처장, 기획평가처장, 교육연구처장, 입학홍보처장, 행정지원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인재개발원장, 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1.8.8., 2019.06.25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서는 장애학생지원시설 만족도 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며,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(항 신설 2016.06.21)

**제10조(회의)** ① 회의는 한 학기에 한번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행복처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9.06.25)

**제12조(회의록 작성·보고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3조(세부사항)**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과-1043, 2008.9.30)

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부-955, 2011.8.11)

이 규정은 2011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부-518, 2016.06.21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